

# 광양와우지구 중흥S-클래스 공통사항 구비서류 안내

## ● 서류제출 및 당첨자 계약 체결 일정

구분	일정	장소
서류제출	2021.09.09.(목) ~ 2021.09.18.(토) 10일간 (10:00 ~ 16:00)	전라남도 광양시 마동 1344 중흥S-클래스 주택전시관
당첨자 계약 체결	2021.09.24.(금) ~ 2021.09.28.(화) 5일간 (10:00 ~ 16:00)	

## ● 유의사항

- ※ 분양대금 및 발코니 확장, 추가선택 옵션 대금은 현장 수납이 불가하오니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.
- ※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.
- ※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은 취소됨.

## ● 계약시 공통 구비서류

구분	서류유형		해당서류	발급 기준	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
	필수	추가 (해당자)			
공통 서류	○		신분증	본인	•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[재외동포 : 국내거소사실신고증 및 국내거주 사실증명서, 외국인 :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]
	○		주민등록표등본	본인	• 현 거주지, 거주기간, 세대원 등 확인 • 성명,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과거주소변동 사항 및 사유 발생일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“전체” 발급
	○		주민등록표초본	본인	•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, 주소 변동사항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을 포함하여 “전체” 발급
	○		가족관계증명서	본인	•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뒷자리포함)등 전부 공개 “상세”로 발급
	○		인감증명,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	본인	• 용도 : 주택공급신청용(본인발급용)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※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서류제출시 본인만 인정되며, 신청자 본인만 신청가능
	○		출입국사실증명원	본인	•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, 제4조제5항에 따라 우선 공급대상으로 청약 한 경우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 ~ 입주자 모집공고일(2021.08.20.)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(출입국 기록없을시 N)로 설정하여 발급
	○		출입국사실증명원	피부양 직계 존·비속	• 직계존·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• 직계존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요양시설 및 해외에 체류중(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)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직계비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(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“미혼인 자녀”로 보지 않으며,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) - 30세 미만 :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- 30세 이상 :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• 노부모특별공급 당첨자의 경우 부양가족수에 포함되는 세대원 전원 제출대상(직계존속 및 직계비속) •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~입주자모집공고일(2021.08.20.)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(출입국 기록없을시 N)로 설정하여 발급
제3자 대리인 구비서류 (본인 외 모두 제 3자로 간주함)	○		위임장	청약자	• 당첨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(당사 견본주택 비치)
	○		인감증명서	청약자	• 용도 : 아파트 신청 위임용,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(서명인증서)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
	○		인감도장	청약자	•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
	○		신분증 및 인감도장	대리인	•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

## ● 자격검증 공통 제출서류

구분	서류유형		해당서류	발급 기준	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
	필수	추가 (해당자)			
공통 (특별/일반 공급)		○	주민등록표초본	부양가족	• 당첨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성명,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주소변동 사항 및 변동사유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등을 포함하여 “전체포함”으로 발급
		○	혼인관계증명서	본인/ 부양가족	• 만 30세 미만 기혼자가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“상세”로 발급 •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“상세”로 발급
		○	무주택서약서	-	• 무주택 입증 서류 또는 무주택서약서(건본주택 비치)
		○	1주택 실수요자 주택 처분확인서	-	• 기존 주택 처분조건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받는 경우(건본주택 비치)
		○	복무확인서 (10년 이상 명시)	본인	•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입주자저축에 가입하고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 받으려는 경우 군복무기간(10년이상) 명시
일반공급 (가점제, 예비입주자)		○	주민등록표초본	피부양 직계존속	•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(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)
		○	가족관계증명서		•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
		○	출입국사실증명서		•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기록대조일을 해당 부양가족의 생년월일 ~ 입주자 모집공고일(2021.08.20.)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(출입국 기록이 없을시 N)로 설정하여 발급
		○	주민등록표초본	피부양 직계비속	• 주민등록표상 청약자와 만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(주소변동 사항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)
		○	가족관계증명서		• 만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, “상세” 발급
		○	출입국사실증명서		•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기록대조일을 해당 부양가족의 생년월일 ~ 입주자 모집공고일(2021.08.20.)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(출입국 기록이 없을시 N)로 설정하여 발급
		○	가족관계증명서	배우자	•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 한 경우(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)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“상세”로 발급
	○	혼인관계증명서	본인	• 만30세 미만 공급신청자가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, 본인 및 배우자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포함) 전부 공개 “상세”로 발급	
해외 근무자 (단신부임)	○		해외체류 증빙서류	본인	•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- 파견 및 출장명령서 •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-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,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• 근로자가 아닌 경우(※ 아래사항 반드시 제출)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※ 유학,연수,관광,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,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사정 불인정
		○	비자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	본인 및 세대원	•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- 비자발급내역,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을 하여야 하며, 세대원이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(계속하여 90일)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
		○	주민등록표등본	본인 및 직계존속	•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-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, 세대주 등록 및 변경 일자 등 모두 포함하여 “상세” 발급. -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(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)
		○	주민등록표초본	직계존속	•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- 주민등록번호, 주소변동 사항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모두 포함 하여 “상세” 발급. -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(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)
		○	출입국사실증명서	배우자	• 배우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다른 국가에서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. • 배우자의 출생년도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.
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(해당주택에 대한소명자료)		○	무주택 소명서류	해당주택	•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(가옥대장등본 포함)
		○			• 무허가건축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
		○			• 소형·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(주택공시자격 증명원 등)
		○			•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
		○	당첨사실 소명서류	본인	•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

※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여, 상기 구비 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 가능함(단,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, 외국인은 공급신청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)

※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된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.

※ 주민등록표등·초본 발급 시 기재(포함)되어야 할 내용 - 주민등록번호, 세대주 성명 및 관계, 주소변동이력

※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(배우자, 직계존·비속 포함)으로 간주함.

## ● 유의사항

- 청약신청, 자격관련 등 국토교통부 및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수신한 자료와 상이하며, 부적격 의심자로 통보받은 고객은 부적격 당첨이 아님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, 소명하지 못할 시 부적격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합니다.
- 부적격당첨자로 최종 확정된 당첨자는 계약기간 중 ‘당첨포기 및 계약부활 요청서’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